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 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8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8월 10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출장소장 직급등의 조문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조문정비(안 제3조, 제5조)

- 출장소장 및 지소장 직급 삭제 → 규칙으로

나. 불합리한 사항 정비(안 제6조)

- 도지사가 따로 정함(직급·정원) → 조례 또는
규칙으로 정함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('98. 8. 31)에 따른 관련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첫째, 출장소장과 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 각각 그 직급을 삭제하였으며

둘째,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”로 되어있는 것을 “조례와 규칙으로”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 부합하도록 안 제6조를 정비하는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'98년 8월 31일 개정되었음에도 동 조례를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 임

-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(안)